

# 물품계약서(최종)

별첨 계약물품명세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달물자 구매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기명 날인한다.

계약일자 : 20170727

## <계약자>

### <발주처>

조달청 구매사업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자재장비과장 윤희경

과 장 : 윤희경 (Tel : 070-4056-7236 )  
사무관/서기관 : 오보경 (Tel : 070-4056-7313 )  
담 당 : 김용현 (Tel : 070-4056-7240 )

### <계약상대자>

상 호 : 현대로템 주식회사  
주 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488-0 (대원동, 현  
대 표 자 : 김승탁  
사업자등록번호 : 609-81-37486  
주 민 등 록 번 호 : 571221- \*\*\*\*\*  
전 화 번 호 : 031-8090-8293  
팩 스 번 호 : 031-596-9759

## <수요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0 (용답동), 김태호(02-6311-9319)

|                             |                                    |                      |
|-----------------------------|------------------------------------|----------------------|
| 계 약 방 법 : 일반경쟁              | 국가(지방)계약<br>법시행령 :                 | 018조 01항 00호 0-목     |
| 계 약 번 호 : 00173107900       | 구매관리번호 :                           | 00173078900          |
| 계 약 건 명 :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                                    |                      |
| 품 명 : 전기동차                  | 수 량 : 1.000                        | 단 위 : 식              |
| 계 약 금 액 : 176,000,000,000 원 | 수 수 료 : 647,814,500 원              |                      |
| 계 약 기 간 :                   | 지체상금율 : 0.050                      |                      |
| 납 품 기 한 : 20201220          |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                      |
| 수 요 기 관 명 : 서울교통공사          | 분할납품 : 가                           | 납 품 장 소 : 서울메트로 지정장소 |
| 검 사 기 관 : 수요기관              | 검 수 기 관 : 수요기관                     |                      |
| 지 급 방 법 : 대지급               | 계 약 구 분 : 총액계약                     |                      |
| 하자담보책임<br>기간(비고) :          | 3년 간()                             |                      |
| 계약특성명 :                     | [지방계약법]설계(승인필요)와 제조가 일괄된 물품의 제조·구매 |                      |
| 계약해지여부 :                    | N                                  |                      |

[ 부가정보 ]

인지세액(과세대상여부) : 350000 원(Y)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 원(해당없음)      계약보증금 : 17,600,000,000 원

특기사항 :

1.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9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지수조정율
2.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 특수조건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8조 하자보수기간 : 3년

3 기타사항

- \* 상세규격은 서울메트로 재무계약처-2000018401호(2017.04.21.)에 의함
- \* 하자보수기간 3년

- ※ 하자조치 불이행으로 공개된 업체는 수요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 물품계약서 상 지급방법이 대지급으로 계약체결한 후 발주기관이 직불로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수정계약 체결 후 집행하여야 합니다.
- \* 요청건명 :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 \* 수요기관연락처 : 02-6110-5331(담당:박용태)

[ 첨부문서 ]

| No. | 문서명   | 파일명   |
|-----|---|---|
| 1   | 00173107900-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제88호2017.04.11).hwp | 00173107900-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제88호2017.04.11).hwp |
| 2   | 001731079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160425).hwp        | 00173107900-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20160425).hwp        |
| 3   | 00173107900-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20150820).hwp        | 00173107900-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20150820).hwp        |
| 4   | 001731079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015.4.14.).hwp      | 00173107900-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2015.4.14.).hwp      |
| 5   | 00173107900-청렴계약서(서약서).hwp                      | 00173107900-청렴계약서(서약서).hwp                      |
| 6   | 00173107900-규격서및내역서.zip                         | 00173107900-규격서및내역서.zip                         |

### 계약물품명세서

| No.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명                  | 규격              | 지역     | 단위       |
|-----|----------|----------|---------------------|-----------------|--------|----------|
|     | 인도조건     | 수량       | 단가                  | 계약금액            | 수요기관   | 납품기한     |
| 기타  |          |          |                     |                 |        |          |
|     | 25210202 | 20068201 | 전기동차                | 전기동차            |        | 식        |
| 1   | 과업내역에 따름 | 1.000    | 176,000,000,000.000 | 176,000,000,000 | 서울교통공사 | 20201220 |

# 목록화 요청 안내문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정부가 소유하거나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목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자께서는 반드시 동 계약물품의 계약체결 이전에 아래 “목록화 요청 절차 안내”를 참고하여 물품목록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계약응답서(계약서 초안)에 직접 입력한 후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 목록화 완료된 품목은 해당 물품식별번호를 입력)

## ◎ 목록화 요청 절차 안내

### (1) 물품 검색 절차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목록정보 → 상품정보통합검색 → 검색결과  
물품목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목록화 요청

### (2) 목록화 요청 절차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목록정보 → 목록화 요청 → 품목등록 →  
품목등록 요청

## 선금지급제도 안내문

□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안전행정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대지급은 조달청에서, 직불은 수요기관에서 당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여 생산자금 확보에 도움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아울러, 선금지급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보증금액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고, 필요 이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 시 :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

○ 지방계약법 적용 시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

# 네트워크론 제도 안내문

조달청에서는 중소 조달업체의 유동성지원을 위해 조달청 계약서(납품요구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네트워크론(Network-Loan)』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네트워크론 이용 가능 은행

- 산업, 경남, 광주, 기업, 농협중앙회, 대구, 부산, 우리, 전북, 하나은행, 외환은행(11개 은행)

## □ 네트워크론 대상 계약 건

- 조달청 대지급 조건으로 계약한 물품구매계약(공동계약 제외)
- 총액계약은 계약금액, 단가계약은 납품요구금액 기준  
(대출금액 등 세부사항은 개별은행의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업체와 협의)

□ 상세안내 :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유동성지원

※ 기타 의문사항은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



#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차량계획처장

(경유)

제목 전기동차 계약금액 조정관련 검토 요청

---

1. 관련근거

- 가. G2B계약번호-00153032303호(2017.07.27.)
- 나. 조달청 자재장비과-6289(2018.05.14.) 『전기동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협의』

2. 위호 관련 전기동차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변경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가. 건 명: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 구매
- 나. 계약금액: 금176,000,000,000원
- 다. 사 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붙임 1. 관련공문(조달청\_현대로템) 1부.  
 2. 물가변동조정보고서(별도송부) 1부. 끝.

# 구 매 조 달 처 **정해일**

과장 박용태

팀장 양영환

처장 05/17  
정해일

협조자

시행 구매조달처-5014 (2018.05.17.)

접수 차량계획처-3083 ( 2018.05.17.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http://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244 전송 6311-4271 / facestar@seoulmetro.co.kr / 비공개 (5)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



조달청

조달청

보다 나은 정부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경유)

제목 전기동차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협의

1. 관련문서

가. 계약번호 00173107900(2017. 7. 27.)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나. 로템 국내PM1 18-042호(2018. 5. 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2. 귀 수요 전기동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현대로템주식회사)로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요청이 있어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울2호선 전동차).

2. 물가변동조정보고서(첨부 파일 용량 초과로 메일 송부). 끝.



주무관 김상두

사무관 이봉규

사무관 대결 05/14  
안정선

협조자

시행 자재장비과-6289 (2018.05.14.)

접수 구매조달처-4904 (2018.05.15.)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우)35208/www.pps.go.kr

전화 042-724-7240 전송 0505-480-1329 / sangdu@korea.kr / 비공개 (5)

공공조달! 이제는 품질과 안전입니다.

HYUNDAI

Rotem

현대로템주식회사

16002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37 Cheoldobangmulgwan-ro, Uiwang-si, Gyeonggi-do, 16002, Korea

Tel : (031) 596-9111, Fax : (031) 596-0777

www.hyundai-rotem.co.kr

문서번호 : 로템 국내PM1 18 - 042호 2018.5.11.  
수 신 : 조달청장  
참 조 : 자재장비과장  
제 목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울2호선 전동차)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나. 귀 청 계약번호 : 00173107900(계약일 : 2017.7.27.)

(계약건명 :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9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

- 물품계약 일반조건 제6절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3. 귀 청과 계약 체결한 서울교통공사 수요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기간 동안 원자재 및 인건비 등의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상기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지수조정율)을 신청합니다.

붙 임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조정에 관한 물가변동조정보고서 - 1부. 끝.

현대로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승탁





|      |             |
|------|-------------|
| 문서번호 | 차량계획처-20102 |
| 등록일자 | 2018.05.30. |
| 결재일자 | 2018.05.30.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          |     |              |
|-----|----------|-----|--------------|
| 차장  | 차장       | 팀장  | 처장           |
| 조남욱 | 우종혁      | 박병섭 | 05/30<br>추돈호 |
| 협조  | 차량제작팀 팀장 |     | 지용현          |

---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용역(안)**

---

**2018. 05.**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  
Seoul Metro

## 〈사전검토 항목〉

<해당 사항에 체크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 구분                                       | 사전 검토항목   | 검토<br>완료                            | 해당<br>없음                            | 비고 |
|--|---|-------------------------------------|-------------------------------------|----|
| <b>대내외<br/>관 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외기관(정부기관, 서울시, 시의회)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li> </ul>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이해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li> </ul>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까?</li> </ul>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b>타당성<br/>검 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 상 법령, 조례 등 법적 검토를 하였습니까?(사규 등 내부검토 항목)</li> </ul>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관계에서 '갑질'조항은 없습니까?</li> </ul>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심사 등 예산운영의 적성성을 검증하였습니까?</li> </ul>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li> </ul>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인하였습니까?</li> </ul>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조정(실무)위원회의 검토 사항입니까?</li> </ul>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b>대시민<br/>홍 보<br/>및<br/>정 보<br/>공 개</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br/>(보도자료, 설명회, 공청회 등)</li> </ul>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시 법적근거는 명확합니까?</li> </ul>             |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 서비스



---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관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 용역(안)

---

2018. 5.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  
Seoul Metro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 용역(안)**

계약상대자[현대로템(주)]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따라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 하고자 함.

**I 경과사항**

1. 전동차 구매 계약체결(조달청 계약-00173107900호/'17.7.27.)  
- 물량 : 214량 / 금액 : 1,760억원 / 계약상대자 : 현대로템(주)
2. 선금 지급(차량계획처-4573호/'17.12.15)  
- 선금지급액 : 160억원
3. 물가변동(E/S)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협의(구매조달처-5014호/'18.05.17.)  
- 조정요청금액 : 4,763,663,000원(지수조정율:3.30%)

**II 현 황**

□ 2호선 전동차(214량) 계약현황

- 건 명 : 2호선 전동차(214량)구매(조달청 계약번호 제00173107900호)
- 계약기간 : '17.7.27.~'20.12.20.(입찰일:'17.7.20.)
- 계약물량 : 2호선 전동차 214량('19년 100량, '20년 114량)
- 계약금액 : 1,760억원(8.22억원/량)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 조정 요청 현황

- 산정기간 : 216일 (기준시점:'17.07.20., 비교시점:'18.02.28.)
- 조정요청 금액 : 4,763,663,000원  
- 조정요청금액 산식 = 물가변동 대상금액 × 지수조정율 - 선금금공제금액  
(158,787,200천원 × 3.30% - 476,314천원 = 4,763,663천원)

### III 검 토

####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 변동 및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④ 영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수 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 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 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따라 산출한다.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호 2017.7.26.)

제6절 물가변동 조정률산출 5.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 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K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검토내용

- 계약상대자 제출자료
  - 조정요청 금액

(단위 : 천원)

|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제외금액 | 물가변동 대상금액   | 지수 조정율 | 선금급 공제금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 후 계약금액 |
|-------------|-------------|-------------|--------|----------|------------------|-------------|
| 176,000,000 | 17,212,800  | 158,787,200 | 3.30%  | 476,314  | <u>4,763,663</u> | 180,763,663 |

※ 조정금액 산식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급공제금액

- 물가상승률 분석

| 비 목 |             | 비율    | 과거지수<br>('17.7월) | 현지수<br>('18.2월)     | 지수<br>변동율 | 증가율    |
|-----|-------------|-------|------------------|---------------------|-----------|--------|
| 합 계 |             | 100%  |                  |                     |           | 1.0330 |
| 재료비 | 공산품         | 63.48 | 95.88            | 98.78               | 1.0302    | 0.6540 |
|     | 수입품         | 7.59  | 82.68            | 84.58               | 1.0229    | 0.0776 |
| 경 비 | 전력, 수도 및 가스 | 0.53  | 109.22           | 105.97              | 0.9702    | 0.0051 |
| 노무비 |             | 17.92 | 100<br>(74,445원) | 104.79<br>(78,014원) | 1.0479    | 0.1878 |
| 제경비 | 국민건강보험료     | 0.33  | 100              | 106.84              | 1.0684    | 0.0035 |
|     | 국민연금보험료     | 0.53  | 100              | 104.78              | 1.0478    | 0.0056 |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0.02  | 100              | 120.35              | 1.2035    | 0.0002 |
|     | 기타경비        | 9.60  | 100              | 103.29              | 1.0329    | 0.0992 |

○ 공사자체 분석자료

- 조정금액 분석

(단위 : 천원)

| 계약금액        | 물가변동<br>적용제외금액 | 물가변동<br>대상금액 | 지수<br>조정율 | 선금급<br>공제금액 | 조정금액      | 물가변동 후<br>계약금액 |
|-------------|----------------|--------------|-----------|-------------|-----------|----------------|
| 176,000,000 | 20,449,800     | 155,550,200  | 3.27%     | 476,314     | 4,610,177 | 180,610,177    |

※ 조정금액 산식 = 물가변동적용대가 × 지수조정율 - 선금급공제금액

※ 물가변동 대상금액 : 전동차 제작 시험검사비 수수료 제외된 금액

※ 전동차 제작 시험검사비는 제작사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물가상승률 분석

| 비 목       |             | 비율    | 과거지수<br>('15.12월) | 현지수<br>('17.1월)     | 지수<br>변동률 | 증가율    |
|-----------|-------------|-------|-------------------|---------------------|-----------|--------|
| 합 계       |             | 100%  |                   |                     |           | 1.0327 |
| 재료비       | 공산품         | 63.48 | 95.88             | 98.78               | 1.0302    | 0.6540 |
|           | 수입품         | 7.59  | 82.68             | 84.58               | 1.0229    | 0.0776 |
| 경 비       | 전력, 수도 및 가스 | 0.53  | 109.22            | 105.97              | 0.9702    | 0.0051 |
| 노무비       |             | 17.92 | 100<br>(74,445원)  | 104.79<br>(78,014원) | 1.0479    | 0.1878 |
| 제경비(기타경비) |             | 10.48 | 100               | 103.29              | 1.0329    | 0.1082 |

## □ 전문기관 용역 필요성

### ○ 계약상대자 검토

- 물가지수 상승률 변화 증가 3.30%

※ 계약금액조정일('17.7.20.)~'18.2.28.(216일 경과)시점

### ○ 공사자체 검토

- 전동차 제작 시험검사비(차량형식승인, 차량제작자승인, 차량완성검사 등) 수수료는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
- 재경비(기타경비) 보험료 항목 포함 일괄 산출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산출
- 물가지수 상승률 변화 증가 3.27%

### ○ 계약금액 조정시 비목(재경비) 비율이 상이 등으로 인하여 전문 기술 및 객관성, 신뢰성을 위해 전문기관 용역의뢰 필요

## IV 추진방안

### □ 용역개요

- 용역명 : 2호선 전동차(214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용역
- 용역범위 : 2호선 전동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적정 계약금액 산출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소요예산 : 3,059,810원(부가세, 이윤 포함)
  - 예산과목 : 비유동자산, 유형자산, 전동차량
  - 산출근거 : 계약원가조사 전문기관 및 자체원가 산출(붙임 참조)
- 과업내용
  - 관련법령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물가상승률 분석 및 “조정기준일” 결정
  - 공정률 산출을 통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조정비율” 및 “기준대가” 산출
  - 선금 공제 여부 검토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최종 조정금액 결정”

□ 추진일정

| 구 분     | 5월 | 6월 | 7월 |
|---------|----|----|----|
| 계획수립 등  | ■  |    |    |
| 발주 및 계약 |    | ■  |    |
| 착공 및 준공 |    | ■  | ■  |

**V** 결 론

-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관련, 계약상대자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계약금액 조정(E/S)을 요청 함에 따라
- 명확한 물가상승률 분석 및 적정 조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객관성, 신뢰성, 시급성 등을 고려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검증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붙 임 : 관련자료 1식. 끝.





#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현대로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회신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대로템(주) 문서 로템 국내PM1 18-042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울2호선 전동차)』.
3. 위 호와 관련, 귀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사항

- 1) 전동차제작 시험검사비(차량형식승인, 차량제작자승인, 차량완성검사 등)수수료 변동 사항
- 2) 제경비(기타경비)중 보험료 일부 항목만 반영한 의견
  - 반영된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미반영 항목 :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끝.

서울교통공사 사장



과장 최용각 차장 우종혁 팀장 박병섭 처장

전결 06/01  
추돈호

협조자

시행 차량계획처-20124 ( 2018.06.01.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608 /전송 / kaak82@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

문서번호 : 로템 국내PM1 18 - 061호 2018.6.19.  
수 신 : 서울교통공사 사장  
참 조 : 차량계획처장  
제 목 : 2호선 214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 회신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조달청 계약 00173078900('17.7.27)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나. 로템 국내PM1 18-042호('18.5.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울2호선 전동차)"

다.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20124('18.6.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회신 요청 "

3. 2호선 전동차 214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위 관련근거 '다'항으로 요청하신 귀 공사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동차제작 시험검사비 수수료 변동 사항에 대하여

- 당사의견

· 해당 시험검사비(2,922,366,880원)는 물가변동과 무관한 불변금액으로 반영 가능

나. 제경비(기타경비)중 보험료 일부 항목만 반영한 의견에 대하여

- 당사의견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관련근거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①항)

·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아 미반영함. 끝.

현대로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승탁



|      |             |
|------|-------------|
| 문서번호 | 차량계획처-22070 |
| 등록일자 | 2018.08.16. |
| 결재일자 | 2018.08.16. |
| 공개여부 | 대시민공개       |
| 방침번호 |             |

|     |          |     |              |
|-----|----------|-----|--------------|
| 차장  | 차장       | 팀장  | 처장           |
| 조남욱 | 우종혁      | 박병섭 | 08/16<br>이승구 |
| 협조  | 차량제작팀 팀장 |     | 황홍환          |
|     |          |     |              |

---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용역 결과 보고**

---

**2018. 08**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  
 Seoul Metro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용역 결과 보고

계약상대자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따라 계약 금액 조정의 적정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전문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물가변동 조정 관련 법령】

- 지방계약법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 제22조 계약체결 후 물가변동 발생 등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시 계약금액 조정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3조 계약체결 후 90일 경과시 지수조정률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39호, '18.07.09)
  - 제1장 제6절 5.가항 금액의 적정성 등 직접심사가 어려울 경우 원가검토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관련 근거]

1. 차량계획처-20102('18.5.30.)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제작관련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용역(안)」
2. 계약서-201807004F300('18.07.03.) 「신조전동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검증용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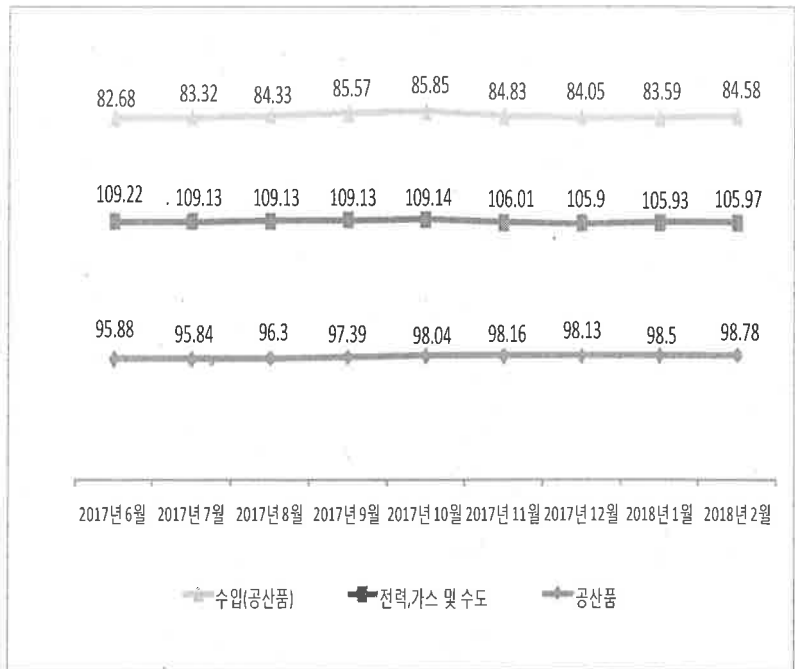
## I 계약 현황

- 사업명 : 2호선 신조전동차(214량) 제작관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증용역
- 계약기간 : '18.07.03. ~ '18.08.02.(착수일 '18.07.04.)
- 계약금액 : 금2,461,568원
- 계약자 : (사)대한경제연구원
- 주요 과업내용
  - 공정률 산출을 통하여 물가변동 적용대가 금액 산정
  - 순 제작금액의 비목군 분류 및 기준시점/비교시점의 지수 산출을 통하여 지수조정률 산정
  - 기성금/선금 공제 여부 검토하여 최종 조정금액 산출

## II 용역 결과

### □ 물가상승률 분석

| 구분     | 공산품   | 전력, 가스 및 수도 | 수입 (공산품) |
|--------|-------|-------------|----------|
| '17/06 | 95.88 | 109.22      | 82.68    |
| '17/07 | 95.84 | 109.13      | 83.32    |
| '17/08 | 96.30 | 109.13      | 84.33    |
| '17/09 | 97.39 | 109.13      | 85.57    |
| '17/10 | 98.04 | 109.14      | 85.85    |
| '17/11 | 98.16 | 106.01      | 84.83    |
| '17/12 | 98.13 | 105.90      | 84.05    |
| '18/01 | 98.50 | 105.93      | 83.59    |
| '18/02 | 98.78 | 105.97      | 84.58    |



※ 근거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생산자 및 수입물가지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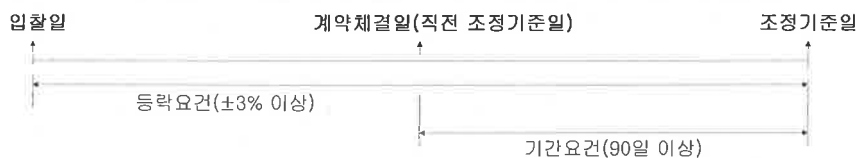
- 생산자 및 수입물가지수는 '17년 6월 물가지수 적용(7월 물가지수는 8월에 공표함)

### □ 조정기준일 → '18.02.28

- 조달청 계약체결('17.7.27) 후 90일 이상 경과 ⇨ '17.10.26.이후
- 물가지수 등락요건  $\pm 3\%$  이상 ⇨ '18.02.28. 충족
- 물가변동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18.02.28.을 조정기준일로 결정

#### 【물가변동 조정의 구비조건】

- 기간요건 : 계약체결(장기계속공사는 제1차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  
 ※ 1회 이상 조정된 경우에는 직전 조정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등락요건 : 입찰일(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일로 조정율이 3%이상 증감  
 · 이 두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 날을 “조정기준일”이라 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및 제2호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하며, 기간요건 - 90일 이상 경과, 등락요건 - 100분의 3이상 증감 되어야 함.

○ 물가변동 경과기간

| 기준시점<br>(입찰일) | 계약일         | 비교시점<br>(조정기준일) | 91일 시점      | 경과기일 |
|---------------|-------------|-----------------|-------------|------|
| 2017.07.20.   | 2017.07.27. | 2018.02.28.     | 2017.10.26. | 215일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39호, '18.07.09) 제1장 제6절 5항 적용  
 -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 **지수조정비율 산출 → 3.20%**

○ 차종별 지수조정비율

| 품 명             | 비목군 분류대가        | 계 수    | 지수변동률   | 지수조정비율     |
|-----------------|-----------------|--------|---------|------------|
| 계               | 176,000,000,000 | 1.0000 |         | 3.20%      |
| 제어차(TC)         | 48,545,971,496  | 0.2758 | 103.04% | 0.28418432 |
| 구동차(M1)         | 33,565,806,582  | 0.1907 | 103.28% | 0.19695496 |
| 구동차(M2)         | 53,229,451,990  | 0.3025 | 103.28% | 0.31242200 |
| 부수차(T1)         | 22,681,468,194  | 0.1289 | 103.32% | 0.13317948 |
| 부수차(T2)         | 14,591,186,148  | 0.0829 | 103.26% | 0.08560254 |
| 예비품 및<br>기기분석장치 | 3,386,115,590   | 0.0192 | 102.84% | 0.01974528 |

※ 지수조정율 : “첨부 2” 참조

※ 품명(TC,M1,M2,T1,T2,예비품)의 비목군 분류의 검토

- 감가상각비 : 제경비 기타경비(Z) 항목에서 경비의 감가상각비 항목으로 재선정  
기계설비부분 표준시장단가 지수(G<sup>3</sup>) 적용(지수: 103.29→82.918)
- 시험검사비 : 제경비 기타경비(Z) 항목에서 경비의 시험검사비 항목으로 재선정  
시험검사비 지수 변동비은 없음(지수: 100→100)
- MOCK-UP 및 매뉴얼 : 제경비 기타경비(Z) 항목에서 경비의 기타경비 항목으로 재선정  
MOCK-UP 및 매뉴얼 자수는 공산품 지수 적용(자수: 103.29→98.78)

□ 적용대가 산출 → 158,787,200천원

○ 전체 사업에서 이행된 부분만큼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

$$\text{적용대가} = \text{계약금액}(176,000\text{백만원}) - \{\text{공정률}(9.78\%) \times \text{계약금액}(176,000\text{백만원})\}$$

| 구 분    | 공정율(18.02.28 기준) | 비 고 |
|--------|------------------|-----|
| 예정 공정률 | 9.78%            | 적용  |
| 실행 공정률 | 8.34%            |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예정공정율과 실행공정율 중 예정 공정율 적용 - 실행공정률이 더 진행 되었을 경우 실행 공정율 적용

□ 선금급 공제금액 산출 → 461,880천원

(단위:천원)

| 계약금액        | 선금급 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율 | 선금급 지급비율 | 선금급 공제금액 |
|-------------|------------|-------------|----------|----------|----------|
| 176,000,000 | 16,000,000 | 158,787,200 | 3.20%    | 9.09%    | 461,880  |

※ 선금급 : 총 160억원('17년)

$$\Rightarrow \text{선금급 공제금액} = \text{물가변동 적용대가} \times \text{물가변동 조정율} \times \text{선금급 지급비율}$$

□ 조정금액 → 4,619,310천원

(단위:천원)

| 계약금액        | 물가변동 적용 제외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물가변동 조정율 | 선금급 공제금액 | 조정금액      |
|-------------|--------------|-------------|----------|----------|-----------|
| 176,000,000 | 17,212,800   | 158,787,200 | 3.20%    | 461,880  | 4,619,310 |

$$\Rightarrow \text{조정금액} = (\text{물가변동 적용대가} \times \text{물가변동 조정율}) - \text{선금급 공제금액}$$

□ 용역결과 → 4,619,310천원 증액

(단위:천원)

| 물가변동 조정율 | 조정 기준일      | 물가변동 조정 금액  |           |             |
|----------|-------------|-------------|-----------|-------------|
|          |             | 계약금액        | 증 감       | 변경금액        |
| 3.20%    | 2018.02.28. | 176,000,000 | 4,619,310 | 180,619,310 |

### III

### 향후 계획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을 위한 계약상대자와 합의 등 절차 진행
- 구매조달처(조달청)에 합의내용 통보 및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 첨부
1. 계약금액조정(ES) 검증 상세내역 1부.
  2. 차종별 지수 조정을 산출표 1부.
  3. 2호선 전동차 214량 월간 ('18.2월) 공정보고 1부.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 검증용역 보고서 1부.
  5. 합의각서 양식 1부. 끝.





#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현대로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대로템(주) 국내PM 18-042호('18.05.11)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3. 위 호와 관련, 귀사에서 제출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 건을 우리공사에서 검토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18.08.20.(월)까지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계약금액조정(ES) 검증 상세내역 1부.  
 2. 차종별 지수 조정을 산출표 1부.  
 3. 합의각서 1부. 끝.

서울교통공사 사장



차장

조남욱

차장

우종혁

팀장

유가

처장

전결 08/16  
이승구

협조자

시행 차량계획처-22072 ( 2018.08.16. ) 접수 ( )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346 / www.seoulmetro.co.kr

전화 /전송 / namwook2001@seoulmetro.co.kr / 비공개(5)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

문서번호 : 로템 국내PM1 18-087호

2018.08.17

수 신 : 서울교통공사 사장

참 조 : 차량계획처장

제 목 :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 회신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조달청 계약 00173078900('17.7.27)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나. 로템 국내PM1 18-042호('18.5.1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울2호선 전동차)"

다.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20124('18.6.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회신 요청"

라. 로템 국내PM1 18-061호('18.6.18) "2호선 214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 회신"

마. 서울교통공사 차량계획처-22072호('18.8.16)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의견 요청"

3. 2호선 전동차 214량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하여, 위 관련근거 '마'항  
으로 보내주신 조정금액에 동의하며, 합의각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 합의각서 -----1부. 끝.

현대로템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김승탁



# 합 의 각 서

1. 계약 건 명 : 2호선 전동차(214량) 구매
2. 계약 업 체 : 현대로템 주식회사
3. 계약 금 액 : 금일천칠백육십억원정(₩176,000,000,000)
4. 계약 번호 및 일자 : 제00173107900호(2017.07.27.)
5. 계약 기 간 : 2017.07.27. ~ 2020.12.20.
6. 변 경 사 항(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      |     |                                      |
|------|-----|--------------------------------------|
| 계약금액 | 당 초 | 금일천칠백육십억원정(₩176,000,000,000)         |
|      | 변경후 | 금일천팔백육십억일천구백삼십일만원정(₩180,619,310,000) |
|      | 증 액 | 금사십육억일천구백삼십일만원정(₩4,619,310,000)      |

7. 기타 사항 : 기타 계약조건은 당초 계약사항과 동일

우리 회사는 위와 같은 계약내용 변경에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8년 8월 17일

계약상대자

주 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상 호 현대로템주식회사

대 표 자 김 승 탁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